

근로자재해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선결과제

송윤아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금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 기업의 파산이나 배상자력 부족 등에 의하여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합의나 소송 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시 시간, 비용, 절차상 어려움이 불가피함
- 산재보험 급부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근재보험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 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산재근로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의 5.5%(약 13만 개)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재보험 가입률을 사업종류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2%,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22%로 높은 편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운수·창고·통신이나 제조업 등의 가입률은 2% 미만임
- 근재보험이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의 적정화와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근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입증이 어렵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보험회사에 있어 사용자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에 상응한 위자료 책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재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반면, 산재근로자의 손해회복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이 산재보험 급부금보다 큰 경우 산재근로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여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민사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 급부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 받음
-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의존하므로 산재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 산업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용자는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합의 또는 소송 후 직접 배상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근재 보험에 가입합¹⁾
 -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의 회복과 관련하여 국가는 과실비율 산정 등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음
- 이에 본고에서는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근재보험에 대해 서 살펴보고 산재보험 초과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함

¹⁾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험의 약칭임

2. 산재보험 개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재근로자는 근 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피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한 법률상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이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 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함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함²⁾
 - 2015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367,186개소, 적용 근로자 수는 1,797만 명, 징수결 정보험료는 6조 3,370억 원, 지급보험금은 4조 791억 원임
-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을 보상하나 보상수준은 산재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함
 - 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에는 일실수입・일실퇴직금 등 근로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
 액의 상실분을 의미하는 소극적 손해, 치료비・간병비 등의 적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있음
 -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 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최대 1,474일)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함
 - 또한 산재보험은 급여로 인정한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음

²⁾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3.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및 근재보험



가. 사용자의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부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³⁾ 지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에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6조) 및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음(민법 제756조 제1항)
 - 한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 준수의무, 즉 자기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 주의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부를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⁴)
- -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과실상계, 생계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준보다 작을 수 있음
 - →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은 산재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입원기간, 소득, 연령, 가동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실시한 다음 위자료를 가산한 금액임(〈표 1〉참조)
 -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산재보험 급부금 등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³⁾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 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의미함

^{4) &}quot;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사용자는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합의 또는 소송 후 직접 지급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근재보험이란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이며, 산재근로자가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근재보상을 청구할 있음
 - ◎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합의에 이르기도 함

(표 1) 산재모험 급부 VS. 사용사의 민사성 존해배상색임액						
구분	산재보험 급부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사망	평균임금의 1,300일 분	평균임금×호프만계수×2/3×과실상계				
장해	장해보상일시금: 1~14급 장해 시 평균임금의 1,474~55일분	평균임금×노동상실률×호프만계수×과실상계				
병원비	급여진료항목만 보상(4일 이상 치료 시)	(기지급의료비+향후의료비)×과실상계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 100%×과실상계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일실퇴직금	해당 없음	평균임금×정년까지의 근무연수				
간병비	요양급여에 포함	간병인의 간병비(일용노동임금적용)×과실상계				
위자료	해당 없음	위자료산정기준금×노동능력상실률× {1-(과실상계×0.6)}				

〈표 1〉 산재보험 급부 vs.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나. 근재보험

- 일반적으로 근재보험은 계약상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금액 산재보험 지급금액 + 위자료'를 지급함
 - ◎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비율.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한 노동력 상실

주: 1) 일시불 배상에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 가치로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출하는데, 이때 가동연한에 중간이 자 공제가 반영된 수치가 호프만계수임. 예를 들어 향후 10년(120개월)간 더 일할 수 있는 월평균임금 100만 원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일시불 손해배상금액은 100만 원×97.1451(호프만계수)×2/3=64,763,400원임

²⁾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함

- 률,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임금수준, 산재지급액,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추산됨
-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 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음
- 실무상 사용되는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 산정기준금×노동능력상실률×{1-(과실비율×0.6)}임

〈표 2〉 산재보험 vs. 근재보험

구분	산재보험	근재보험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관리공단	손해보험회사			
보험성격	강제보험	임의보험			
담보내용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성립요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요양보상은 실손보상,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일정일분을 지급)	1인당, 1사고당 보상한도 내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완전배상하며,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포함			
상계처리	무과실책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을 상계하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공제함			
근거법령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민법 및 상법			

- 2015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의 5.5%(약 13만 개)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재보험 가입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표 3〉 참조)
 - 근재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5년 기준 818억 원으로 사용자당 보험료는 약 61만 원임

〈표 3〉 근재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계약			보상				
구분	가입건수	보험료	건당 보험료	가입률	사고건수	보험금	건당 보험금	손해율
2010년	119,441	65,720	0.546	7.4	1,292	49,396	38	76.9
2011년	125,604	73,141	0.560	7.2	2,246	52,438	23	78.0
2012년	120,502	69,782	0.575	6.6	2,392	52,167	22	77.2
2013년	121,109	71,539	0.571	6.1	2,120	55,989	26	85.0
2014년	119,719	72,236	0.650	5.5	1,966	47,720	24	81.1
2015년	129,748	81,847	0.607	5.5	1,802	50,072	28	45.5

- 주: 1) 가입률=(국내)근재보험 가입 사용자 수/산재보험 가입 사용자 수
 -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연보

- 근재보험 가입률을 사업종류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2%,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22%로 높은 편이나 사망만인율이 비교적 높은 운수·창고·통신이나 제조업 등의 가입률은 2%에도 미치지 않음(〈표4〉참조)
 -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보험가입여력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또는 근로자의 권익이 조직적으로 보호되는 사업장일수록 근재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큼

〈표 4〉 사업종류별 근재보험 가입율과 재해·사망률

(단위: %)

구분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	건설업	운수 · 창고 · 통신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의 사업
근재보험 가입률	2.3	1.2	21.9	31.6	0.6	1.5	0.2
재해율	13.8	0.6	0.1	0.8	0.5	1.2	0.3
사망만인율	326.4	1.0	0.4	1.8	1.5	0.9	0.3

- 주: 1) 근재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가입 사용자 수 대비 근재보험 가입 사용자 수의 비율임
 - 2) '기타의 사업'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함
 - 3) 재해율은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의 비율임
 - 4) 근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재해율은 2016년 기준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연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통계연보

4. 근재보험 활용 제고 필요성과 선결과제



가, 근재보험 활용 제고 필요성

-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재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음
 - 구체적으로 기업의 파산이나 자력부족 등에 의하여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배상 청구권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음
 - 또한 합의나 소송 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시 시간, 비용, 절차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특히 산재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 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사용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산재보험 초과손해 보상 수단으로 근재보험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로써 산재근로자는 배상청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상한도액 내에서 근로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선결과제

- 근재보험이 산재보험 초과손해 배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산재근로자의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근재보상을 청구할 있으며,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보험회사에 있음

- 보험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과실 등에 대해서 과실유무와 비율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내용을 조사함
 - 산재보험 승인 시에는 재해의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에 따른 내용, 고의사고 여부, 근로관계, 임금과 지급관계 등을 중심으로만 조사하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따른 과실은 조사하지 않음
- 근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과실입증이 어려워 사용자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산재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큼

■ 또한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를 감안한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의 적정화·현실화가 필요함

- 2016년 10월 20일 사법부는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위자료를 현실화·적정화하고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공표함⁵⁾
 - 사법부가 유형에 따라 설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교통사고 1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명예훼손 일반 피해 5천만 원, 명예훼손 중대피해 1억 원임
- 이에 자동차보험은 2017년 3월부터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최고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⁶⁾ kizi

⁵⁾ 위자료 연구반(2017).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사법부 간행물)"

⁶⁾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2, 27), "2017년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